

2019.07.

2019년 세법개정안 - 금융세제

1.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법 §8 ①)

□ 개정 전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0.5%

□ 개정내용

증권거래세 세율 0.45%로 인하

□ 개정의 효과

주식 투자자에 대한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것으로,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9. 6. 3.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장외 거래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

□ 적용시기

2020. 4.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소득법 §94 등)

□ 개정 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에만,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에만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 250만원씩 적용됨

□ 개정내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대신 기본공제금액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 개정의 효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 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나 다른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순소득이 없거나 적은데, 손실이 고려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었던 불합리함이 해소됨.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쪽에서 고르게 이익이 발생했던 납세자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기본공제 각 250만원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되므로,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종전보다 과세소득이 많아질 수 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1)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16의2)

□ 개정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8. 1. 1. 이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은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 개정내용

연간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적용기한은 2020. 12. 31.로 유지)

□ 개정의 효과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으로써 스톡옵션으로 지급받는 것이 종전보다 더 유리해짐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2)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16의4)

□ 개정 전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5. 1. 1. 이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행사 당시에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인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음

(*) 적격 요건: ①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②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일 것, ③ 부여후 2년간 재직후 행사(사망·정년 등 제외), ④ 행사 후 1년간 보유

□ 개정내용

이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2020. 12. 31.까지로 적용기한 신설

□ 개정의 효과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한시적 규정으로 전환됨. 정확한 법문이 제출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으나, 2018. 1. 1. 이후 부여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부여일 기준으로 적용기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4.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조특법 §13)

□ 개정 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 개정내용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

- 대상: 개인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 개정의 효과

신규 출자만이 아닌, 개인투자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 함으로써 개인의 벤처투자자금 회수가 활성화될 수 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소득법 §59의3 ①,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 개정 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개정내용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ISA 추가 납입 방법: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 개정의 효과

ISA 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로 세금 혜택이 부여됨. ISA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흡수하여, 연금계좌의 납입액이 증대될 수 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50세 이상 개인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조특법 §86의4 신설)

□ 개정 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의 납입한도 이내의 금액임

□ 개정내용

50세 이상 개인 중 (i)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ii)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연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의 납입한도가 적용됨

□ 개정의 효과

고소득자를 제외한 50세 이상 개인의 연금납입액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납입분부터 2022. 12. 31.까지 적용함

(3)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

□ 개정 전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퇴직금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7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 개정내용

연금수령시점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개정의 효과

장기 연금수령시 10% 상당의 세율 인하 효과가 있어, 퇴직금을 장기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함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국기법 §45의2)

□ 개정 전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오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등 만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 단,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개정내용

경정청구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함. 즉,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함

□ 개정의 효과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거부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불복이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져 다소 용이해 질 것으로 보임. 또한,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민사 법리가 아닌 세법의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민사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할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CONTACT



최규환 회계사
02-528-5719
khchoi@yulchon.com



성수현 변호사
02-528-5887
shseong@yulchon.com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